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10804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1080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577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 선고 2016. 10. 1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577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92,770원 및 그 중 38,200,000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50,735,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800,000원을 넘어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으로 38,935,000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피고 사이의 '렌트카 영업소 운영약정'에 따라 피고가 영업소 운영수익금, 영업 차량의 할부금 및 각종 세금 등을 본사인 원고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목

판사임택준

판사염혜수